

# 김포시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

의안 번호	제2893호
----------	--------

제출년월일 2021. 10. 08.  
제출자 홍원길 의원

## 1. 심사경과

- 본 안건은 2021년 10월 08일 홍원길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임.

## 2. 제안이유

- '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.'라는 아프리카 속담이 있듯이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국가, 지방자치단체, 민간 등 범국가적인 협력이 필요함.  
이에 따라 김포시에 주소를 둔 보호관찰대상자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지원하여 지역사회 범죄예방과 주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고 범죄예방 확산을 위한 교육·홍보, 자원봉사활동 활성화 지원 등을 통하여 사회적 비용 감소와 김포시민의 안전보장에 이바지하고자 함.

## 3. 주요내용

- 조례의 목적 및 정의(안 제1조~제2조)
- 시장의 책무 및 시민의 협력(안 제3조~제4조)
- 지원사업(안 제5조)
- 협력체계 구축(안 제6조)
- 비밀준수의 의무(안 제7조)
- 포상(안 제8조)

## 4. 검토의견

- 본 안건은 「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죄를 지은 사람의 건전한 사회 복귀를 위하여 보호선도 사업을 육성할 책임을 지도록 한 규정에 따라 보호관찰 대상자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지원하여 지역사회의 범죄 예방과 주민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제정하는 사안이며 보호관찰 대상자가 원활하게 사회복귀를 할 수 있도록 상담 및 심리치료 사업, 직업 교육 등을 실시하여 지역사회 내 범죄예방과 주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으로 상위법과의 저촉여부 및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됨